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9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황명선
임미애 · 이원택 · 서삼석
이개호 · 김현정 · 허영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행정·재정·기술·업무협력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기술개발, 실증·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병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에탈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

사.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병커링 선박

4. “해운 선사”란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를 말한다.

5. “조선사”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중복 행정 및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실증·보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공사·조선사·해운 선사 등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완료 시점 및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시설 완공 시기의 동기화를 위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실증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에 대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운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을 “공공선박, 내항선, 외항 국적선대를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사업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사업
3.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에탈을 연료로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u> <u>사.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병커링 선박</u> 4. “해운 선사”란 화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회사를 말한다. 5. “조선사”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중북 행정 및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실증·보급을 모두 처</u>

<신 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공사·조선사·해운 선사 등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완료 시점 및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시설 완공 시기의 동기화를 위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실증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에 대한 지원

<u><신 설></u>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환경친화적</u>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운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u>공공선박, 내항선, 외항 국적선대</u> 등을 <u>환경친화적</u>-----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u>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u> <u>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u> <u>상용화 사업</u> 2. <u>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u>
--	--

	<u>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사업</u> <u>3.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u> <u>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	---